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연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5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이연희 · 안태준 · 박정현
임미애 · 김정호 · 김남희
박용갑 · 손명수 · 박홍배
문진석 · 한민수 · 이광희
김기표 · 이춘석 · 이정문
박상혁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종합·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, 종합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한 뒤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, 실제 시공을 맡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음. 더욱이 통계상으로도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 영역으로 진출하는 정도보다,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 영역에서 수주하는 비중과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 이 같은 수주 불균형이 계속될 경우, 전문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악화와 연쇄 도산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임.

이에 수주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업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몰제를 규정하고 있는 부

칙을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중 “다만,”을 “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한”으로,
“포함한다)이 4억 3천만원”을 “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공사 시공자격의 적용례)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
이 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
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6조(건설공사의 시공자격) 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을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등록 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다. 1. ~ 3. (생 략) 4.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제8조제 2항에 따라 시공 가능한 시설 물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공사 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는 경우. <u>다</u> <u>만, 공사예정금액(「부가가치</u> <u>세법」에 따른 부가가치세와</u> <u>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를 포</u> <u>함한다)이 4억 3천만원 미만</u> <u>인 전문공사를 원도급받는 경</u> <u>우는 제외한다.</u> 5. ~ 7. (생 략) ② ~ ④ (생 략)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	제16조(건설공사의 시공자격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다</u> <u>만, 대통령령으로 정한</u> ----- ----- ----- <u>포함한다)</u> ----- ----- -----.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법률 제19865호 건설산업기본법

일부개정법률 부칙	일부개정법률 부칙
<u>제2조(유효기간) 제16조제1항제4</u> <u>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</u> <u>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u>	<u><삭 제></u>